

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

제정 2017. 7. 04.

개정 2018. 7. 26.

개정 2020. 2. 25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(이하‘재단’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(이하 ‘창작소’로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재단이 성남시로부터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‘입주’라 함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맞추어 창작자를 위한 상주형 전용공간에 들어와 창작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, 공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‘일반입주’, 사업운영 상의 필요 및 예술가 교환 등의 협약 등 특정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‘기획입주’로 구분된다.

②‘입주자’라 함은 창작소의 입주를 목적으로 공간 및 시설 사용을 위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(운영시간) ① 창작소의 운영시간은 각 공간의 특성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.

② 입주자 공간(이하 ‘입주공간’이라 한다)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,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③ 기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.

제 2 장 입주 신청 및 사용

제5조(입주기간)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운영목적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는 대표이사가 정한다.

②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.

제6조(입주신청공고) ①‘일반입주’의 입주공고는 입주공간 운영 일정에 따라 정기, 수시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재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.

②‘기획입주’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, 기획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

제7조(입주신청자격)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
2. 세부사항은 해당 창작소 입주신청 공고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.

제8조(입주신청서류)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입주신청서(공고 내 소정양식)
2. 경력 및 활동내역서 등 기타 공고에서 요청하는 제 서류

제9조(입주자 선정 및 지원) ① 입주자는 재단 또는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(이하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

- ② 입주심사는 재단에서 수립한 입주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에 따르며, 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.
- ③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입주자 지원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.

제10조(입주절차) 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자는 입주를 위하여 <별지 제1호> 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서 체결 등 재단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.

- ② 입주계약서는 <별지 제1호> 표준 서식으로 하되,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, 첨가하는 등 입주계약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용의무) ① 입주자는 입주공간을 매월 최소 10일 이상(월 80시간 이상)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사고 및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<별지 제3호>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입주기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20.2.25.>

- ② 재단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입주공간 개방)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게 창작소 소개 및 홍보를 위하여 입주공간의 개방이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한다.

제13조(사용자 준수사항)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을 시에 재단은 경고 할 수 있다.

1. 입주자는 제11조 이용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미준수 시 재단은 입주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.

2. 입주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 제출, 입주공간 개방, 교육 프로그램 강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3. 입주자는 타인에게 입주공간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 단, 입주자를 포함한 외부인들로 구성된 공동 프로젝트 등 추진으로 부득이 입주공간을 이용할 경우, 외부인 성명, 이용기간, 이용목적 등에 대해 재단에 <별지 제2호>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.
4. 입주자는 재단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·난방기구,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5.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 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6.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 내에서 음주, 애완동물 사육 등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7. 재단은 제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입주공간을 개방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열기의 사용여부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8. 입주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9. 입주자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공간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4조(퇴실 및 원상보존)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입주자가 입주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13조 미이행으로 경고누적 4회 이상이 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
③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중 창작소를 포함한 국내외 타 창작공간에 입주해서는 아니 되며, 입주시 창작소 입주자격이 상실되므로 퇴실하여야 한다. (단, 재단과의 협약 등으로 인한 레지던시 교환프로그램 참여시에는 제외)

④ 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,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⑤ 입주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단의 승인 없이 퇴실할 경우 향후 3년간 창작소 입주지원을 제한 한다.

⑥ 모든 입주자는 퇴실 시 원상보존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3 장 보 칙

제15조(위임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 <개정 2018.7.26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1호 서식] 표준 입주계약서 <개정 2018.7.26., 2020.2.25>



공공예술창작소 000 표준 입주계약서

(재)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(이하 “창작소”으로 한다)와 입주자 000은 (는)(이하 “입주자”라 한다) 입주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그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조(사용 목적물)

1. 명 칭 : 000 공공예술창작소
2. 소재지 :
3. 입주호실 : 호

제2조(입주기간) 입주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
제3조(지원금 지급 및 정산) (재)성남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정한 별도의 방식에 따라 입주작가에게 지원금 총 원(₩ 원)을 지원하고 입주작가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완료한다.

제4조(입주자의 의무)

- ① 입주자는 창작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자는 창작소 입주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입주자는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기존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창작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④ 삭제 <2020.2.25.>
- ⑤ 입주자는 매월 활동보고서 및 이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책임의 귀속)

- ① 스튜디오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작품 등의 망실, 도난, 훼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.
- ② 입주자가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명백한 창작소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가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

- ①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입주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2. 입주자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
 3. 입주자가 계약기간 중에 공공예술창작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창작소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한 경우
 4. 기타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② 계약의 해지 시 창작소는 입주자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있고, 입주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강제 퇴실에 따른 일체의 부담은 입주자가 진다.

제7조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, 또는 계약의 해석상 창작소와 입주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되,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된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 <개정 2018.7.26.>
- ② 삭제 <2018. 7. 26.>

붙임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1부.
공공예술창작소 입주규칙 1부.

20 년 월 일

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(인)

입주자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 표준 협업예술가 공간사용신청서



공공예술창작소 협업예술가 공간사용 신청서

1. 신청자(입주자)

신청자 (입주자)	성명(단체명)			
	주소			
	연락처		E-mail	

2. 신청내용

사업 개요	사업명				
	추진일정				
	추진장소				
	사업내용				
신청 개요	사용장소				
	사용기간				
	신청사유				
	협업예술가	성명	활동분야	소속	휴대전화

입주자(단체) ○○○는 협업예술가와의 공동작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위와 같이 협업예술가 공간사용신청을 하며, 사용시 공간사용 규칙 등을 함께 준수하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입주자(단체)

(인)

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

[별지 제3호 서식] 표준 입주자 장기 공간 미사용 신청서
<개정 2020.2.25.>

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	공공예술창작소 입주예술가 장기 공간 미사용 신청서
--	--

1. 신청자(입주자)

신청자	성명(단체명)			
	주소			
	연락처		E-mail	

2. 신청내용

신청기간	
신청사유	
첨부서류	※ 사유 증빙 서류 제출 - 건강상의 이유 (진단서 등) - 기타 사유 (기타 증명 가능한 서류 일체)

입주자(단체) ○○○는 입주공간의 사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매월 10일(월 80시간) 이상
사용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오니 양해바랍
니다.

20 년 월 일

입주자(단체) (인)

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